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미화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451 발의연월일: 2025. 3. 28.

발 의 자:서미화・김 윤・이수진

윤종군 • 허성무 • 전종덕

박정현 · 조계원 · 박해철

박용갑・양문석・박지원

정진욱 · 송재봉 · 최민희

장종태 · 용혜인 · 고민정
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하는 동시에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음.

한편 국가인권위원회(이하'인권위'라 함)는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, 최근 10년간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건수만 1만 7천여 건 이상에 달함. 인권위는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36조(조사의 방법)에 따라 조사 사항과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진료기록을 포함한 자료를 피진정병원에 공문으로 요구하여 받고 있음.

그러나 인권위 조사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

해 현행 의료법에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36조에 따라 인권위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인,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예외 규정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조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, 인권위의 조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제3항제20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3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0.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3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 부를 요청하는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기록 열람 등) ①・② (생	제21조(기록 열람 등) ①・② (현
략)	행과 같음)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,	3
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	
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
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	
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	
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	
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사ㆍ	
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	
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	
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	
아니하다.	
1. ~ 19. (생 략)	1. ~ 19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20.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36
	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
	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
	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
	또는 사본 교부를 요구하는
	<u>경우</u>
④・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